

계약제교원임용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계약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와 관련된 약정(연구실적 및 교원업적평가, 복무사항 평가에 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

제3조(계약 임용기간) ①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1차까지 재계약 임용할 수 있으며, 신진연구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재계약시 일반 교수로 재계약한다.(개정 2016.11.29.)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인 교원과 한의과대학 임상교원(한의학과)의 최초 계약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2차까지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08.30., 2016.10.25.)

②제 1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정년보장 임용전까지는 직급승진 잔여년수로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직급승진 잔여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으로 재계약 임용하되 계약기간중 승진 임용시 승진직급 소요년수로 재계약 임용한다.

③교수로 신규임용 되거나 재직 중 교수로 승진한 경우 본 대학교 재직년수가 6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다.

④(개정 2012.08.10, 2012.11.30, 2013.03.26., 2013.12.26., 삭제 2015.12.29.)

⑤(신설 2012.11.30., 2013.03.26., 삭제 2015.12.29.)

제4조(재계약 임용 심사절차) 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소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의 2에 따른다.

제5조(재계약 임용 등) ①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 임용은 임용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업적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12.29.)

1. 재계약 임용에 필요한 연간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별표 1과 같고, 연구실적 계열 구분에 따른 해당학과는 교원인사규정의 별표 6과 같다.
2. (삭제 2013.10.30.)
3. (삭제 2013.10.30.)

②(개정 2012.08.10., 2013.12.26., 2014.05.28., 삭제 2015.12.29.)

③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제 교원 중 본 대학교가 재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④해외파견중인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경우에는 차기 재계약 임용일까지 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차기 재계약 심사시에는 미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분량을 심사기준에 추가하여 재임용 심사한다.

⑤(개정 2013.03.26., 삭제 2015.12.29.)

제6조(의무 및 금지) ①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신임교원은 임용 후 1년(2개 학기) 이내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수업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2.)

③신임교원은 사전승인 없이 계약기간 중 다른 기관에 출강하거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의원사직 및 면직) ①계약기간 동안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으며 학기 말로 의원 사직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9.30.)

②신임교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이전에 임용된 신입교원의 계약기간 및 연구실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2006.2.28 이전에 임용된 계약제 전임교원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계약기간 포함하여 총 6년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임용하며, 재계약기간을 만료한 후 정년보장 임용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연구실적에 직급 승진 잔여년수를 곱한 연구실적으로 한다.

| | 계열구분 | 재계약 연구실적(년간) |
|------------------|--------|--|
| 실 적 기 준 | 인문계열 | 연구실적 100% (단, 국내A급학술지 1편 포함) × 년수 |
| | 사회계열 | 연구실적 100% (단, 국내A급학술지 1편 포함) × 년수 |
| | 이공(A) | 연구실적 100% (단, 국제A급학술지(SCI급) 0.5편 포함) × 년수 |
| | 이공(B) | 연구실적 100% (단, 국제A급학술지(SCI급) 0.5편 포함) × 년수 |
| | 이공(C) | 연구실적 100% (단, 국내A급학술지1편 포함) × 년수 |
| | 의학계열 | 연구실적 100% (단, 국제A급학술지(SCI급) 0.5편 포함) × 년수 |
| | 예·체능계열 | 연구실적 100% (단, 국내중앙무대(1급) 0.5회 포함) × 년수 |

- 1)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참여할 경우는 논문 1편으로 간주함.
- 2)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국내·국제전문 저서 1권에 한하여 국내A급 논문1편으로 대체 가능.
- 3) 이공A계열의 경우 국제A급학술지(SCI급) 1편은 국내 A급(국제B급) 3편으로 대체 가능.

3-2-21~4 제3편 행정

단, 필수요건의 1/2이상은 반드시 국제A급학술지(SCI급)로 해야함.

- 4) 이공B계열과 의계열은 국제A급학술지(SCI급) 1편은 국내 A급(국제 B급) 3편으로 대체 가능.
- 5) 이공C계열의 설계전공의 경우 전국단위의 공인된 설계공모전의 대상 및 특선작 1편에 한하여 국내A급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
- 6) 한의과 대학 임상교수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
- 7) 예·체능계열의 경우 이론을 주로 연구하는 교원은 인문·사회계열로 간주함.
- 8) 그 외의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교원연구실적평가에관한세칙)에 따른다.

2. 2006.3.1 이후에 임용된 신입교원은 최초 2년의 계약 만료 후 본문 제3조(계약 임용기간), 제5조(재계약 임용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계약제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제3조의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내규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환산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9년 9월 1일 이전 재계약 대상 교원은 최초계약(2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환산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제교원(정년트랙)으로 재직중인 자는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종전의 계약내용이 유효하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내규를 적용 받는다.

②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제교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종전의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2010년 3월 이전)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의 개정(2011년 3월 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제 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하여, 2012년 2월말까지는 국제A급 학술지에 국제B급(SCIE제외), 국제C급(SCIE제외) 학술지를 포함한다. 단, 배점은 개정(2011년 3월 1일)된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제3조제4항, 제5조제5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별표1)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 이전에 임용된 계약제교원은 2013년 2월28일까지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2년08월31일 이전에 임용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 연구실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계 열 | 재계약 연구실적 기준(년간) |
|-----------|---|
| 인 문 | 국내저명학술지 200% × 년수 |
| 사 회 | 국내저명학술지 200% × 년수 |
| 예 체 능(이론) | 국내저명학술지 200% × 년수 |
| 예 체 능(실기) | 연구실적 200% (단, 미술·음악계열 국내A급이상 100%, 체육계열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주저자 100%, 연기예술학과는 국내저명이상 실적 100% 포함) × 년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3-2-21~6 제3편 행 정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별표1)에도 불구하고 2012년 02월29일 이전에 임용된 이공C계열 중 계획·설계 전공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연간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200%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에게도 개정된 제3조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제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계약제 교원도 개정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재계약임용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별표1)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에 임용되는 교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5학년도 계약(신규, 재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5조 제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계약 임용된 교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차기 계약(신규, 재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별표 1) 계약임용 연구실적 중 이공D와 신진연구 중점교수군의 의과대학 의예과에 대한 재계약 심사는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2016년 5월 23일 이전 규정으로 심사하고 개정된 계약임용 연구실적은 차기 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신진연구 중점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이 재계약시 신진연구중점교수로 재 선

3-2-21~8 제3편 행 정

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신진연구중점 교수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②이 내규 시행일 (별표 1)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 임용된 교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하고 개정된 (별표 1)은 차기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별표1의 특기사항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기존 계약에 의거 재직중인 교원은 차 후 재임용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임용 연구실적 경과조치) <별표 1>의 이공C 계열의 보건과학대학 (의용생체공학과 제외) 소속 교원의 SCI급 논문의 1/2(450점)까지 국내저명 학술지 및 SCOPUS 학술지 논문실적 대체 인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계약자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형 산학협력 교원 재임용 심사 경과조치) ①이 내규 별표1의 특기사항 6)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기존 계약에 의거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현 임용기간 1회에 한하여 소속 학과 계열 구분 일반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이 내규 별표1의 특기사항 7)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기존 계약에 의거 재직중인 교원은 차후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03.01, 2012.08.10, 2013.02.27., 2013.12.26., 2014.03.31., 2014.11.18., 2014.12.24., 2015.05.26., 2015.12.29., 2016.05.24., 2016.08.30., 2016.11.29., 2018.02.22., 2018.05.29., 2018.08.23., 2019.05.28.)

계약임용 연구실적

| 계열 | 연구실적 | | |
|-------------------------|---|---|------------------------------|
| | 최초 계약(3년) | 재계약(년건) | |
| 인문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75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250% × 년수 | |
| 사회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450% (다만, 국제일반학술지 이상 300% 포함)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150% × 년수 (다만, 국제일반학술지 이상 100% × 년수 포함) | |
| 이공A | SCI급 이상 학술지 450% | SCI급 이상 학술지 150% × 년수 | |
| 이공B | SCI급 이상 학술지 450% | SCI급 이상 학술지 150% × 년수 | |
| 이공C | SCI급 이상 학술지 450% | SCI급 이상 학술지 150% × 년수 | |
| 이공D | SCI급 이상 학술지 450% | SCI급 이상 학술지 150% × 년수 | |
| 신진교수 연구중점 교수군 | SCI급 이상 학술지 1,000% | SCI급 이상 학술지 333% × 년수 | |
| 의대 (의예과) 기초의학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 1,000%(주저자 400% 포함) 또는 주저자 Impact Factor 합 11 이상으로 택일 | SCI급 이상 학술지 333%(주저자 133%를 포함) × 년수 이상 또는 주저자 Impact Factor 합 3.67 × 년수로 택일 | |
| 의대(의예과) 인문사회의학계 열 | SCI급 이상 학술지 450%(주저자 300% 포함) 또는 주저 자 Impact Factor 합 11 이상으로 택일 | SCI급 이상 학술지 150%(주저자 100% 포함) × 년수 이상 또는 주저자 Impact Factor 합 3.67 × 년수로 택일 | |
| 산학협력 | 산학협력 연구실적 450% 이상 (산학협력연구 실적은 외부 수탁 연구비, 산업체 연구비, 지식재산권, SW개발, 기술이전, 산학협력사업, 기자 재 활용 수익, 교원 창업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 연구 실적 중 SW개발, 산학협력 사업, 기자재 활용 수익 실적은 100%까지만 인정한다. | 산학협력 연구실적 150% × 년수 (산학협력연구 실적은 외부수탁 연구비, 산업체 연구비, 지적재산권, SW개발, 기술이전, 산학협력사업, 기자 재 활용 수익, 교원 창업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 연구 실적 중 SW개발, 산학협력 사업, 기자재 활용 수익 실적은 33%까지만 인정한다. | |
| 의학계열 | SCI급 이상 학술지 450% ※의과대학 의학과와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소속 임상교 원은 따로 정함. | SCI급 이상 학술지 150% × 년수 ※의과대학 의학과와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소속 임상교원 은 따로 정함. | |
| 엔체 영역 | 인문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75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250% × 년수 |
| | 실기 | 국내A급 이상 공연 및 전시실적 750% | 국내A급 이상 공연 및 전시 실적 250% × 년수 |

3-2-21~10 제3편 행 정

| | |
|------------------|---|
| <p>특기 사항</p> | <p>1¹⁾ 이공C계열 중 계획·설계 전공자의 필수조항인 SCI급 이상 학술지 실적은 SCOPUS학술지와 국내저명학술지 논문으로 대체가 가능함. 단, SCOPUS학술지논문은 재계약기준의 1.5배수, 국내저명학술지논문은 재계약기준의 2배수를 달성하여야 대체 인정이 가능함.</p> <p>1²⁾ 이공C계열 중 보건과학대학(의용생체공학과 제외) 소속 교원의 필수조항인 SCI급 이상 학술지 실적은 1/2까지 SCOPUS학술지와 국내저명학술지 논문으로 대체가 가능함. 단, SCOPUS학술지논문은 1.5배수, 국내저명학술지논문은 2배수를 달성하여야 대체 인정이 가능함.</p> <p>2) 의학계열은 재계약 연구실적기준 중 1/3까지는 국내저명학술지실적 2배수로 대체 가능하며, SCOPUS학술지는 1.5배수로 대체 가능함.</p> <p>※ 한의과대학 원전학 전공은 사회계열에 준하되, 필수요구사항인 국제일반학술지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실적 2배수로 대체 가능함.</p> <p>※ SCI급 학술지란, SCI, SCIE, SSCI, A&HCI를 의미함</p> <p>※ 예체능계열에서의 실기를 주로 하는 교원이란, 연구의 주된 실적을 공연, 전시 및 선수 본인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경우를 의미함.</p> <p>※ 신진교수 연구중점교수 군이란, 최초 임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년 미만인 계약제(정년트랙)교원으로 주당 강의시수가 3시간인 교원을 의미함.</p> <p>※ 의과대학 의학과와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소속 임상교원은 따로 정한다.</p> <p>3) 모든 계열에서 기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 등록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으로 재계약에 필요한 SCI급(사회계열 국제일반학술지 포함) 최저연구실적의 50/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국제(국내)전문학술서 및 교원연구실적평가시행에관한세칙에 따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는 해당학과 교원의 발표실적은 30/100까지만 대체 인정함.</p> <p>4) 의예과 인문사회의학(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학통계학, 의사학, 의료인문학)교원은 사회계열에 준하되 필수요구사항인 국제일반학술지는 국내저명학술지 2배수로 대체 가능함.</p> <p>5) 사회계열 패션디자인전공의 필수요구사항인 국제일반학술지는 국내저명학술지 2배수로 대체 가능함.</p> <p>6) 산학협력 교원 중 채용형 산학협력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산학협력 연구실적 최소기준의 40/100까지 SCI급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함.</p> <p>7) 채용형 산학협력 교원은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최소기준의 1/3 이상을 외부 수탁연구비 수주 실적으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p> |
| <p>실적물 인정 범위</p> | <p>『교원연구실적평가 시행에 관한 세칙』에 의함</p> |
| <p>인정 환산율</p> | <p>『교원연구실적평가 시행에 관한 세칙』에 의하되</p> <p>※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말한다)는 당해 논문 또는 저서 등에 주저자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 교원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p> |

(별표 2) (삭제 2015.12.29.)

(별표 3) (개정 2012.08.10., 2013.02.27., 2014.11.18., 2015.05.26., 삭제 2015.12.29.)